

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2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해당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3) 해당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	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	지정취소		
다.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	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라.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	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마.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	법 제11조의4	업무정지	업무정지	업무정지

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바.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제1항제4호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	2개월 시정권고	4개월 업무정지 4개월	6개월 지정취소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